

## 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아 산 시 의 회 의 장



### 1. 조례안 목록

조례안	발의의원	비고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희영 의원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최재영 의원	
아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의상 의원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전남수 의원	
아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	김수영 의원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영 의원	
아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맹의석 의원	

※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 2. 의견제출

○ 이 조례 제·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의 의견서를 아산시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한 : 2020년 2월 16일(일)까지

나. 의견 제출방법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 3) 서면, 우편, 전자우편(pys9799@korea.kr), 팩스(041-540-2135)로 제출
- 4) 의견 제출할 곳 : (우)31512/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 041-540-2905, 2628, 2705, 27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